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29조(임원의 임기)</p> <p>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<u>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사무처장은 4년으로 <u>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처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3. 감사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<u>4. 당연직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,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</p> <p>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</p>	<p>제29조(임원의 임기)</p> <p>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<u>한다.</u></p> <p>2. 사무처장은 4년으로 <u>한다.</u>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처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3. 감사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(감사 제외) - 관련 조항 수정 및 삭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<u>임기 횡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,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⑥~⑩ (생략)</p> <p>⑪ <u>임원의</u> 연임 횡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<u>임원으로서의</u>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<u>임원으로서</u>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.(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.)</p> <p>⑫ <u>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횡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.</u></p>	<p>⑥~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<u>감사의</u> 연임 횡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<u>감사로서의</u>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<u>감사로서</u>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.(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.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p>	
<p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p> <p>① 시·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1. 시·도체육회, <u>시·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</u> 관리</p> <p>2. 시·도체육회, <u>시·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</u></p> <p>3. 시·도체육회 <u>의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횡수 제한의 예외인정</u> 심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p> <p>① 시·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1. 시·도체육회 <u>의 각종 규정 총괄</u> 관리</p> <p>2. 시·도체육회 <u>와 시·도체육회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</u></p> <p>3. 시·도체육회 <u>와 시·도체육회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</u></p> <p>4. 시·도체육회 <u>와 시·도체육회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(그 구성원을 포함한다)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(경기, 제도, 단체운영 등)의 조정·중재</u>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치 목적 정비 - 설치 목적을 정관과 일치 및 임원의 연임 심의 삭제